

강원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91회 임시회(5. 6. ~ 5. 19.)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제291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조례안 : 11건(도지사 4, 위원회 2, 의원 5) * 제안자 구분

위원회	의안(조례안)	제안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5. 19.)
운영위원회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위원회	수정
기획행정 위원회 (3)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원안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도지사	원안
사회문화 위원회 (2)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수정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원안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
경제건설 위원회 (2)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원안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의원	원안
교 육 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원	수정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91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5. 26.(화)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29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4),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속초1),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5),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김규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양구), 김경식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영월1),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미래통합당·횡성1)

강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발의 이유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1.25 → 0.75%)함에 따라 현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1.05%)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위임 범위 (30%)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확대(30% → 50%)하여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미모 의원



남상규 의원



주대하 의원



허소영 의원



심영미 의원



김규호 의원



김경식 의원



한창수 의원

▣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한창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미래통합당·횡성1)
- 공동발의: 반태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3)
윤지영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강원도민의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도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의 매체를 통해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창수 의원

반태연 의원

윤지영 의원

심영미 의원

▣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강원도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 보충해야할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이다.

한편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강원도지사가 빈집정비의 방향 및 시행방법, 빈집실태조사의 방법 및 지원기준, 빈집의 철거, 정비 및 관리의 예산 지원 대상 등이 포함된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사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정유선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공동발의: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태백2)



정유선 의원



김혁동 의원

강원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강원도 내 거주 및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학생을 말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탈북학생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기관의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